

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 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양주군 재활용 추진협의회 (이하 “군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군 협의회 구성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등) ① 군수는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8. 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 (93. 3. 6) 및 경기도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준칙 (93. 6. 13)

에 종전의 이원화 되었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통합 일원화 하고 내용 일부를 신설 보완 삭제하고자 함.

주요골자

- 폐기물 수수료 상향조정 (안 제14조)
-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신설 (안 제14조)
- 관리구역외등 처리 수수료 (안 제20조)
- 건축폐기물 처리 수수료 (안 제20조)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찌꺼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다양배출 일반폐기물 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4.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김루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 실시 계획을 수립, 매년 1월말까지 공고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매분기 1회 이상 당해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 기본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주군의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제6조(일반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등) 군수는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 지역의 정부 또는 일부를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사항,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 재생 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 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 사업소 또는 민간단체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 음식물, 채소의 찌꺼기등 부패성 쓰레기는 비닐봉지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 모기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의 별도 관리를 위하여 분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 ~ 100가구당 1개조 (4 ~ 5종)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 또는 장애자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 (1m²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 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①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당해 토지 및 건물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4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일반폐기물의 처리등) ① 군수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일반폐기물 관리구역내 일반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이 타종등의 신호가 있을 경우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차량등에 실어주는 타종식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등 그 성상이 다른 일반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 계약은 군수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대행구역 (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
- 나. 대행기간

다. 대행수수료

라.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분수별, 형식별 대수

마.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바. 손수례의 대수 및 사용지역

사.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

아.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등 배치계획

자.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차.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카. 기타 일반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⑥ 군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주군의 관할구역내의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일반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능력 또는 일반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일반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업무
4. 기타 일반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3장 일반폐기물의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제14조(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발생원등에 따라 건축물 단위나 세대단위 또는 물량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며, 그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폐기물 수집방법의 차이, 중간처리 여부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100분의 20까지 가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쓰레기 : 건축면적 또는 건축물의 재산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필요로 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상주하는 거주자 수에 비례하여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건물이 주거구역과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 쓰레기 : 아파트,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하며, 호별 면적 또는 건축물의 재산세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호별로 상주하는 거주자수에 비례하여 별도의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사업장쓰레기 : 사업장에서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배출되는 쓰레기를 말하며, 유사 업종별로 건물면적에 따라 부과한다.
4. 대형폐기물 : 가전제품, 가구류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의 크기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압축, 파쇄등 중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지역등을 정하여 발생원별로 일반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납기) ① 일반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구 分	대상기간	부과기준일	납 기	부과징수권자	납 부 장 소	비 고
1/4분기	1-3 월	3 . 1	3.16 - 3 월말일	읍.면장	농협, 우체국 은현면사무소, 군금고	
2/4분기	4-6 월	6 . 1	6.16 - 6 월말일	"	"	
3/4분기	7-9 월	9 . 1	9.16 - 9 월말일	"	"	
4/4분기	10-12월	12 . 1	12.16 - 12월말일	"	"	

② 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가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원활한 금액을 징수한다. 월 계산은 15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14일이하일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기를 조정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체납수수료의 체납금) 일반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액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체납수수료의 강제징수) 군수는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강제징수의 절차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수수료납부의무의 승계)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 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수료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관리구역외 등 처리수수료) 군수가 지정한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외의 거주자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요청이 있어 이를 수거할 경우 “별표 2”의 처리수수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

제21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등) ①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 지역별 지원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 영향 지역 지원협의체 (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보)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확보함에 있어 재원의 지원규모 및 구체적 산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 (업무위탁등) 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폐기물 처리실적 제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양주군폐기물

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행정처분등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 수집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기준

종 별	부 과 기 준	월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일반가정폐기물	200,000원이상 50,000원 초과시마다	700	비과세 건물은 재산세 액 5,000원 미만 요금 을 적용함
	재산세액 200,000 이상	2,050	
	" 150,000 ~ 200,000 미만	1,750	
	" 100,000 ~ 150,000 미만	1,450	
	" 80,000 ~ 100,000 미만	1,150	
	" 60,000 ~ 80,000 미만	950	
	" 50,000 ~ 60,000 미만	750	
	" 40,000 ~ 50,000 미만	650	
	" 30,000 ~ 40,000 미만	550	
	" 20,000 ~ 30,000 미만	450	
	" 10,000 ~ 20,000 미만	350	
	" 5,000 ~ 10,000 미만	250	

	" 5,000 미만	200	
	주민등록상 인구 1인당	100	

종 별		부 과 기 준	월부과금액 (단위: 원)	비 고
소 규 모	1 등 급	은행, 기업체 (공장 제조업), 창고, 병원, 공장, 극장, 예식장,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660m ² 초과 165m ² 마다 가산	2,280
			건물면적 660m ² 이상	13,140
			" 660m ² 미만	11,430
			" 496m ² 미만	8,000
			" 330m ² 미만	5,710
			" 165m ² 미만	2,860
			" 99m ² 미만	2,400
사 급	2 등	관공서, 학교, 공공 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시설	660m ² 초과 165m ² 마다 가산	2,280
			건물면적 660m ² 이상	2,880
			" 660m ² 미만	2,290
			" 330m ² 미만	2,060
			" 165m ² 미만	1,370
업	3	의료업소, 식품점객 업소, 숙박업소, 유기 장, 육탕, 이. 미용업 소, 약업소, 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330m ² 초과 165m ² 마다 가산	2,260
			건물면적 330m ² 이상	4,570
			" 330m ² 미만	4,000

종 별		부 과 기 준	월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장 등 급		건물면적 165m ² 미만	2,860	
		" 99m ² 미만	1,940	
		" 66m ² 미만	1,710	
		" 33m ² 미만	1,480	
		" 16.5m ² 미만	1,430	

종 별		부 과 기 준	월부과금액 (단위:원)	비 고
소 규 모 사 업 장	점포(시장 및 노점 포함), 백화점, 슈퍼 마켓, 연쇄점 ※단, 노점은 부지 면적임	49.5m ² 초과 16.5m ² 마다 가산	570	
		건물면적 49.5m ² 이상	2,740	
		" 49.5m ² 미만	2,050	
		" 33m ² 미만	1,370	
		" 16.5m ² 미만	1,020	
		" 9.9m ² 미만	970	
		" 6.6m ² 미만	910	
세 차장, 주차장, 주유 소, 콘테이너야적장, 실외체육시설(테니 스장, 골프연습장 포함), 하치장, 고물수 집상, 블럭공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		660m ² 초과 330m ² 마다 가산	910	
		건물면적 660m ² 이상	6,860	
		" 660m ² 미만	4,570	
		" 330m ² 미만	2,280	
		" 165m ² 미만	1,140	

종 별	부 과 기 준	부과 금액 (단위: 원)	비 고
대	냉장고	500리터 이상 300리터 미만 300리터 미만	8,000 6,000 4,000
	텔레비전	19인치 이상 19인치 미만	5,000 3,000
	세탁기		3,000
형	에어콘	264m ² 형 이상 66m ² 형 이상 66m ² 형 이상	8,000 5,000 3,000
	가스 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000 2,000
	탈수기		2,000
기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
	장농	120cm 이상 1쪽 120cm 미만 1쪽	15,000 10,000
	서랍장	5단 이상 4단 이하	4,000 2,000
물	신발장		2,000
	문갑		3,000
	화장대		3,000
용	장식장		4,000
	응접셋트	장의자 (3인이상) 의자 (2인이상)	5,000 2,000
	침대	1인용	10,000

종 별	부 과 기 준	부과 금액 (단위:원)	비 고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5,000 15,000 8,000	
캐비넷		4,000	
화일캐비넷	4단 이상 3단 이하	3,000 2,000	
양수책상		7,000	
핀수책상		4,000	
피아노		15,000	
올겐		4,000	

주) 1. 일반가정, 소규모 사업장은 수집·운반 수수료이며, 대형폐기물은 처리비 포함

가격임.

2.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 2)

○ 관리구역외 등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종 별	부 과 기 준	부과 금액 (단위:원)	비 고
관리구역	농촌지역 군부대 공공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또는 톤당 3,000원 4,000원	군매립지 사용인 경우 "

종 별	부 과 기 준	부과 금액 (단위:원)	비 고
외 음식점, 숙박업소, 접객 업소 및 이와 유사한 업소	m ² 또는 톤당	5,000원	"
사 업 장 쓰 래 기	다량 배출자	m ² 또는 톤당	7,000원
	다량배출 이외의 자	m ² 또는 톤당	6,000원
건 축 폐 기 물	톤당	6,800원	"

-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서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드럼통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은 세제곱미터(m³)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일반폐기물의 최종 처리과정에서 성분시험, 계근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등의 실비를 수집.운반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12 】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8. 3.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의 시행